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4 선고 2017가합100173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206311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4 선고 2017가합100173 판결

전문

원고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희, 정한별

피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지연, 오종한

변론 종결2018. 7. 19.

판결 선고2018. 10. 4.

주문

1. 피고와 E 주식회사 사이에 2016. 2. 5. 체결된 풋옵션 행사에 관한 합의서 변경계약 중 정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채무 면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561,917,8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의 관계 및 원고의 유상증자

1) 피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F는 2007. 10.경 원고 발행 보통주식 1,100만 주 중 90%인 990만 주를 인수하였다.

2) 원고는 2008. 9. 8.경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1,200만 주(보통주식, 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였다.

한편, E는 2008. 9. 2. 피고 회사 임직원의 지인인 G, H, I 등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직후인 2008. 9. 4. 원고가 발행할 신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J 주식회사로부터 350억 원을 변제기 3년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위 차용금 중 300억 원으로 원고의 신주 중 600만 주(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약정였다.

E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E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부터 6개월간 대상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른바 풋옵션)를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출금의 변제기 도래 무렵인 2011. 9. 5. E로부터 대상주식 등을 포함한 주식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고, 이를 담보로 E에 위 대출금 변제자금으로 32,232,675,216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5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E와 피고는 2011. 9. 6. 위 풋옵션 계약 내용 중 행사기간을 '2011. 9. 6.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간'으로, 매매대금을 '위 32,232,675,216원을 원금으로 하여 2011. 9. 5.부터 연 8.5%의 비율에 따라 단리로 산정한 금액이 가산된 금액'으로, 풋옵션 조기행사 사유 중 피고의 회사채 신용등급에 관한 기준을 'BB+ 이하'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변경된 풋옵션 계약을 '이 사건 풋옵션 계약'이라 한다).

나. E의 풋옵션 행사 경과

1) 2014. 1.경 피고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BB+ 이하로 하락하였고, 이에 E는 2014. 1. 27.경 피고에 이 사건 풋옵션 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조기행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E와 피고는 2014. 2. 17. E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가 지급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합의를 체결하였고,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옵션합의'라 한다).

제2조 본건 풋옵션의 행사와 대가의 지급

1. 풋옵션의 조기행사

가. 본 합의서 체결일에 옵션권리자는 본건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 당일자로 대상주식에 대한 옵션권리자와 옵션의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대상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38,950,759,509원으로 확정하되 본조 제2항 소정의 현금 및/또는 현물로 지급된다.

2. 대가의 지급

E가 본건 풋옵션을 조기행사함으로써 성립되는 대상주식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E에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현금 및/또는 현물로 지급한다.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E에 매매의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의 액수 및 현물의 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 현금의 지급

피고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액수는 80억 원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K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 지분 및 주식매매계약상의 매도인 지위(이하 통틀어 'K 관련 자산'이라 한다)의 이전

피고는 2014. 2. 17.까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K 주식(기명식 보통주식, 액면가 5,000원)

199,000주를 E에 양도하고 이와 더불어 2012. 7. 18. 피고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K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 및 2013. 7. 2. 피고, L, M 사이에 체결된 K 주식매매 관련 합의서상 피고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E에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전한다.

다. N IT 관련 출자지분의 이전

피고는 2014. 2. 17.까지 서울 마포구 N 소재 건물에 대한 자산운용사업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O(이하 'N펀드'라 한다)의 출자지분을 E에 적법하고 유효하게 양도하고, 2009. 10. 28. 피고, 원고, P단체 사이에 체결된 위 투자신탁의 수익자간 합의서상 당사자 지위 또한 적법하고 유효하게 E에 이전하기로 한다.

1	현금	80억
2	K 지분	150억(이하 'K 정산금'이라 한다)
3	N펀드 관련 출자지분	50억(이하 'N펀드 정산금'이라 한다)
	이하 생략	

제3조 대가 지급과 관련한 특약사항

1. K 관련 자산 이전 관련 특약

가. K 주식의 E에 양도되고, L 및 M 등과 계약상 지위 이전 합의서가 체결되었을 경우,

A. L 및 M 또는 지정한 제3자가 2012. 7. 18. 체결된 K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 계약 및 2013. 7. 2. 체결된 K 주식매매 관련 합의서에 따라 E에 이행해야 하는 K 주식 잔금지급의무의 일부 이행을 통해, 혹은

B.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x) 제3자에 대한 K 주식의 매각, (y) 기확보된 이행/집행 수단을 통한 법적 조치의 성공, (z) 기타 여하한 사유를 통해

2014. 6. 30.까지 E가 회수하는 금액이 (i) 1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정산금 명목으로 2014. 7. 31.까지 E에 지급하고1), (이하 생략)

나. 본항 가.호의 (i)에 따른 정산에 있어서 피고는 아래에서 정하는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여 미이행 잔금 액수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E에 지급함으로써 정산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A. E의 미이행 잔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전환하도록 하여 피고가 신주를 E에 배정 및

발행하는 방법

B. 현물을 지급하는 방법

2. N펀드 출자지분 관련 특약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P단체, 원고, E 등과 N펀드의 수익자간 합의서가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A.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투자신탁 출자지분을 E에 이전하여야 하고, (이하 생략)

제4조 해제와 손해배상

1. 피고가 제2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의 지급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할 경우 E는 피고에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최고한 뒤 최고한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미이행된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미이행된 의무에 관한 개별계약에 대하여만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의 통지로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본 합의서 전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그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당해 대상 의무의 목적물 가액에 해제 의사통지일로부터 손해배상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9% 상당의 지연배상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E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와 E는 2014. 2. 17. 이 사건 옵션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방법에 관하여 정하면서 2014. 2. 17. 이후 E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한편, E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옵션합의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게 되면 전액을 지체 없이 원고에게 지급하고, 현금 외 자산을 지급받게 되면 2016. 9. 5.까지 이를 처분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금원을 지체 없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옵션합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옵션합의 제2조 제2항 가.호에 따라 E에 현금 80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같은 항 나.호에 따라 K 관련 자산을 E에 이전하였으나, E가 위 합의 제3조 제1항 가.호에서 정한 2014. 6. 30.까지 K 관련 자산을 통하여 회수한 금원은 없었다. 피고는 같은 호에서 정한 2014. 7. 31.까지 E에 K 정산금 15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만 그에 대한 지연이자 약정에 따라 2014. 8. 1.부터

2015. 3. 2.까지 합계 약 9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이하 약정 지연이자에서 위 9억 원을 공제한 이자를 '이 사건 지연이자'라 하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지연이자 등'이라 한다).

2) 한편 피고의 N펀드 출자지분을 이전하기 위하여는 다른 수익자인 P단체의 동의가 필요하였는데, P단체가 피고의 출자지분을 E에 이전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피고는 E에 N펀드 출자지분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다.

3) 이에 E와 피고는 2016. 2. 5. 이 사건 옵션합의 중 K 관련 자산 및 N펀드 출자지분 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이라 한다).

- 피고는 K 관련 자산 이전 합의 해지에 따라 풋옵션 미정산금 150억 원을 75억 원씩 2회차에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한다.

- 1회차 분할 변제기일 2016. 6. 5. 이내에 75억 원, 2회차 분할 변제기일 2016. 12. 5. 이내에 75억 원을 지급한다.

- 피고가 E에 상기 분할 변제기일까지 미정산금 지급 이행 시 현재까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면제하고, 별도의 지연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 N펀드 출자지분 이전 합의를 해지한다. 그에 따라 풋옵션 미정산금 50억 원은 2016. 9. 5.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 피고가 E에 상기 변제기일까지 미정산금 지급 이행 시 별도의 지연손해금2) 을 부과하지 않는다(이하 위 지연이자 면제합의와 합하여 '이 사건 면제합의'라 한다).

라.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 변제

1) E는 이 사건 옵션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현금 등으로 2014. 2. 17.부터 2016. 11. 18.까지 원고에게 합계 약 354억 원을 변제하였다.

2) 위 변제금을 E와 원고 사이 변제충당 합의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이자 순서로 충당하면,

마지막 변제일인 2016. 11. 18. 기준 잔존 금원은 이자 약 74억 원이다.

마. E의 재산상태

이 사건 변경합의 무렵 E는 원고에 대하여 약 25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옵션합의 중 K 관련 자산 및 N펀드 출자지분 이전 합의로 인한 피고에 대한 권리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바.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및 종료

원고는 2015. 4. 7.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4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3. 14.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0, 12 내지 14, 16, 17호증, 을 제1 내지 5, 7, 12, 20 내지 2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E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에 따른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채권은 이 사건 변경합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에서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E가 이 사건 변경합의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사실, 그 무렵 E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옵션합의 중 K 관련 자산 및 N펀드 출자지분 이전 합의로 인한 피고에 대한 권리, 즉, K 정산금 150억 원 및 이 사건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와 N펀드 출자지분 이전 합의를 해제하고 그로 인한 N펀드 정산금 50억 원 및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일하였던 사실, 이 사건 면제합의로 인하여 이 사건 지연이자 등 채권이 소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면제합의는 E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E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로서는 위 면제합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변경합의 대상 중 K 정산금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옵션합의 제3조 제1항 나.호에 따라 현금 대신 피고의 신주 내지 현물로 변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 주식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원인으로 한 상장폐지실질심사 개시로 인하여 2014. 12. 4.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가 이루어진 바 있었고,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피고 및 피고의 임원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악재가 계속되는 바람에 피고의 주가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더욱이 E가 150억 원 상당의 신주를 지급받을 경우 이 사건 변경합의일 기준 피고 회사 주식의 종가(3,040원)로 계산할 때 약 500만 주를 지급받게 될 것인데, 이를 장내 매도할 경우 주가가 급락할 것이 확실하므로 E로서는 매수자를 찾아 블록딜 형식의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을 찾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E에 K 정산금을 피고의 신주로 지급한다면, E로서는 이를 현금화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N펀드 정산금의 경우, 이 사건 옵션합의 제3조 제2항 A호에서 펀드 수익자 사이에 당사자 지위 이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E에 N펀드 출자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E가 펀드 수익자인 P단체의 부동의의 이유로 이 부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E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효하게 N펀드 출자지분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통하여 50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E는 빠른 시일 내에 위 각 정산금 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지연이자 등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자산 확보에 훨씬 유리하다는 합리적인 판단 하에 피고와 협상을 거쳐 이 사건 변제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그중 이 사건 면제합의만을 따로 떼어 사해해위라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에게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20 내지 24, 33, 35호증, 을 제42,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면제합의는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지연이자 등 채권을 포기한 행위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변경합의 무렵 E는 원고에 대하여 약 252억 원 상당의 대여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E는 이 사건 옵션합의 중 K 관련 자산 및 N펀드 출자지분 이전 합의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K 정산금 150억 원 및 그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1.부터 연 9%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다만 피고가 기변제한 약 9억 원은 제외)의 지급을, N펀드 출자지분 이전 합의를 해제하고 N펀드 정산금 50억 원 및 그에 대한 해제일로부터 연 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각 구할 수 있었으며, 위 권리가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러나 위 권리를 전부 행사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다.

(2) 이 사건 면제합의에 따라 면제된 이 사건 지연이자 등은 약 22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3) K 정산금의 경우, E는 이 사건 변경합의 당시 이 사건 옵션합의 제3조 제1항 나.호에 따라 K 정산금 150억 원 대신 그날의 피고 주가(1주당 종가: 3,040원)로 계산할 때 총 주식가액이 150억 원에 이르는 피고의 신주 약 500만 주로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4) N펀드 정산금의 경우, 이 사건 옵션합의 제3조 제2항의 해석상 피고는 이 사건 옵션합의 체결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다른 펀드 수익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유효하게 E에 출자지분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 당시까지도 위와 같은 출자지분이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E는 이 사건 옵션합의 제4조에 따라 이 부분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N펀드 정산금 50억 원 및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다.

(5) 주가는 여러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수시로 변동할 수 있어 그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도시기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바, 이 사건 변경합의 무렵 피고의 주식이 현금보다 가치가 낮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이 사건 변경합의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피고의 주가가 위 변경합의 당시보다 상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E가 K 정산금으로 150억 원에 상응하는 피고의 신주 약 500만 주 대신 현금 150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간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정산금에 대한 이 사건 지연이자 등 합계 약 22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컸다거나 적어도 같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원고의 지배구조 및 신주발행 과정, E의 설립배경 및 대상주식 인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사건 대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E의 피고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풋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7) E 측에서 이 사건 변경합의를 주도한 Q은 2009. 5.경부터 2013. 3.경까지는 피고의 계열사로서 원고의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F에서, 2013. 4. 1.경부터는 피고의 관계사지원팀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15.경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변경합의 무렵까지 피고와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

(8) E의 최초 주주는 피고 임직원의 지인들(G, H, I 등)이었고, 이후 주주가 된 R, S 등도 위 Q의 부 내지 지인으로 피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9) 이 사건 변경합의는 합계 200억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정산금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 E와 피고 양측 모두에게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것이 마땅한 검토, 보고 등에 관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와 E 사이 실질적이고 진지한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4) 피고의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E와 합리적인 협상을 거친 결과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E에 K 정산금에 상응하는 신주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지연이자 등을 면제받는 것이 E에 불리하지 않다는 합리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변제합의를 체결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지,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위 3)의 나)항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범위

따라서 이 사건 면제합의는 E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원금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마지막 변제일인 2016. 11. 18. 기준 약 74억 원이고, 이 사건 면제합의로 인하여 면제된 채무액은 약 22억 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제합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3.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면제합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또는 무자력인 E를 대위하여 E의 피고에 대한 면제된 이 사건 지연이자 등 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2,561,917,8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면제합의로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수익은 현실의 금전

등 유체물이 아니라 위 합의로 인하여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기존의 이 사건 지연이자 등 채무가 소멸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게 된 이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당연히 취소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면제합의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E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기존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달리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익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므로, 더 나아가 수익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의 이행을 별도로 직접 또는 대위의 방법에 의하여 구할 것까지는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면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이 부활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는 회복되는 채권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수익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연이자 등 채권이 부활하더라도, E가 직접 회복된 이 사건 지연이자 등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연이자 등 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E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환우

판사최형준

판사한옥형

- 1) 피고는 위 150억 원에 대하여 연 9%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사후 약정함
- 2) 합의서에는 '지연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옵션합의 제4조 제2항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